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책임자 김동식 선임연구위원

생애주기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재생산 정책과제

초록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건강 분야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 생애를 넘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이슈임.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WHO, 2017).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성·재생산 관련 서비스의 질 역시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최고 수준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차별과 낙인이 없이 자유로워야 함을 제시함(Barot, 2015).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이하 SRHR)는 국가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관련 필요과제를 제안함.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생애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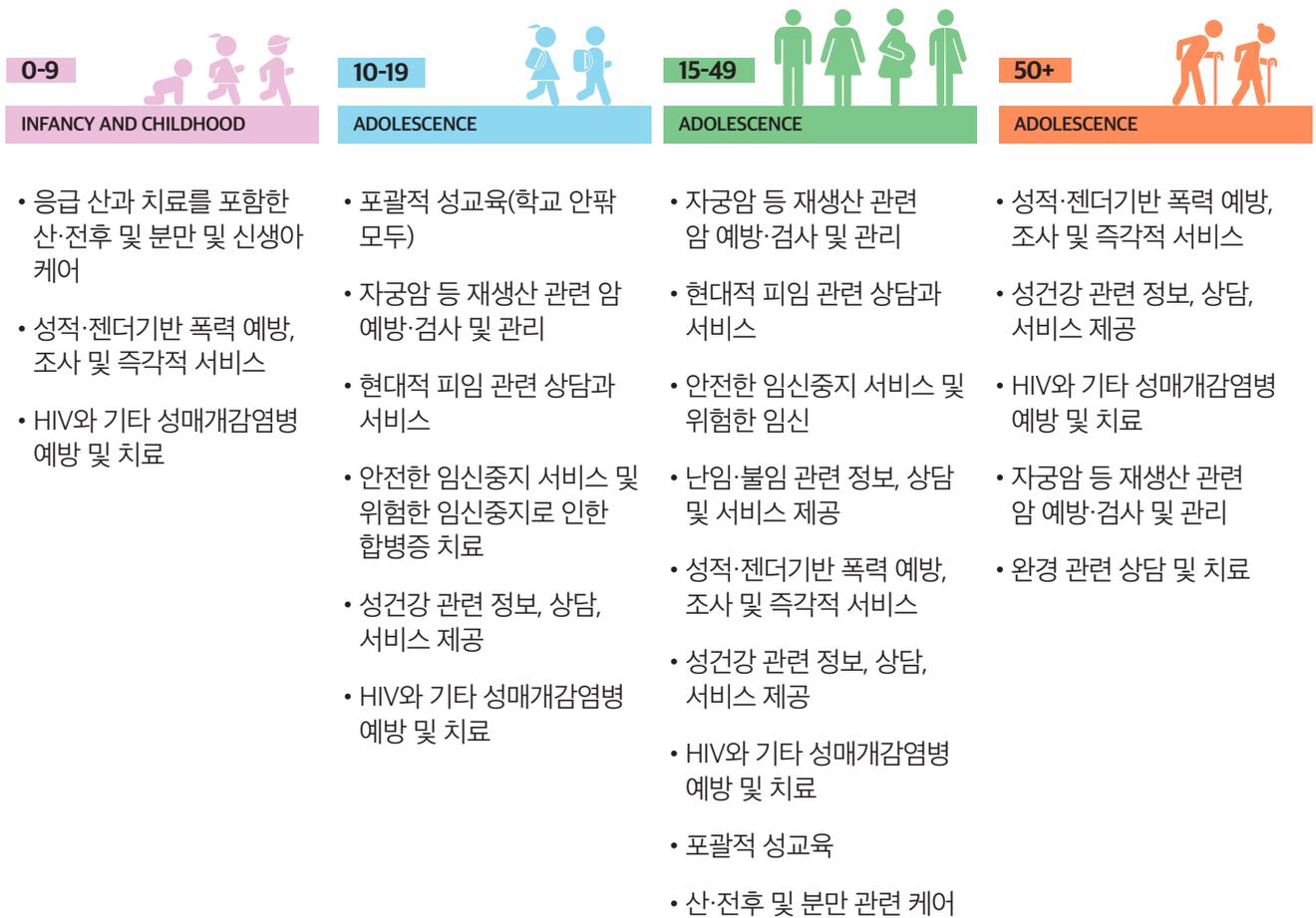
● 성·재생산 건강 상태의 정의와 영역

- ▶ 성·재생산 건강 상태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함.
- ▶ 안녕 상태를 유지 혹은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성·재생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그 권리를 지원하는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모든 개인은 자신의 성·재생산 건강의 이로움에 대해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음(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9).
- ▶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건강 수요와 개입의 영역은유아·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및 노인기와 같이 생애에 따라서 다르며, 또한 유아·아동기부터 노인기에 이르는 생애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음(<그림 1>).
- ▶ 그래서 관련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생애적 접근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한 생애의 성·재생산 건강 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는 그다음 단계 생애의 건강결과와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 그러므로, 성·재생산 건강 권리의 보장을 위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변화를 고려한 지속성이 필요함.

KWDI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슈페이퍼

김동식·조영주·김효정·정연주·동제연·김남순·이현주·김채윤·문주현(2021).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9).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림1>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의 필수 개입 요소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삶의 질, 그리고 성평등

●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를 보면, SRHR의 다양한 영역(월경, 피임, 성행위, 성매개감염병, 임신·출산 및 임신 소모(유·사산, 인공임신중절), 난임, 완경 등)에서, 그리고 세부 영역에서의 기능과 건강상태 등이 삶의 질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 ▶ 성 기능(sexual function)이 기혼여성의 성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Nik-Azin 외, 2013).
- ▶ 어떤 현대식 피임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식기의 건강과 부작용의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Pinar 외, 2019).

●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삶의 질’은 단지 성과 재생산 관련 기능적·질환적·도구적 요소에 관한 것은 아님.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이 다양한 성과 다양한 생애,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개개인의 건강과 삶 전반에서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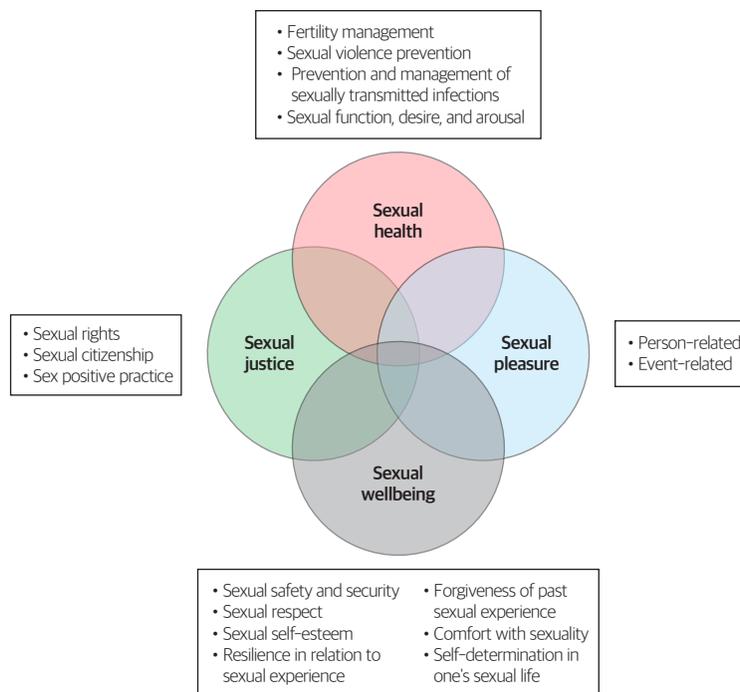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삶의 질, 둘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이를 매개하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 ▶ 성평등 관련 지표(GEM, GDI, GII, GGI)와 World Value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웰빙과 삶의 질의 수준도 높음(Audette 외, 2019).

● **성·재생산 건강에 있어 개인(특히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성평등과 연관성이 있음.**

- ▶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의 여부, 성행위의 상대방,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함.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젠더권력관계에서 약자에게 있어서는 성적 주체로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소은영, 2019).
-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20)는 최근 여성의 현대적 피임방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피임에 대한 규범과 편견, 낙인 및 성별 고정관념 등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 강화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음.
- ▶ Mitchell 외(2021)는 아래 <그림2>에서와 같이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공공보건정책의 포괄적 접근을 제안하였음. 여기서는 단지 성적 기능과 질환 및 이에 관한 관리와 예방 등을 다루는 기존의 Sexual Health 영역뿐만 아니라, Sexual Justice, Sexual Wellbeing, Sexual Pleasure도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으로 보여줌.
- ▶ Sexual Justice가 평등한 성·재생산 권리를 위해 사회적, 문화적 및 법적인 부분에서의 권리 부분을 의미한다면, Sexual Pleasure는 성적 파트너 및 그와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말함. 그리고 Sexual Wellbeing은 앞서 언급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존중감 및 자존감 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Sexual Wellbeing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림2> 섹슈얼리티에 관한 공공보건의 4가지 포괄적 개입 영역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의 한계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이 2006~2010년 제1차를 거쳐 현재 제4차(2021~2025년) 시기에 있음.
- 정부는 계획수립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제4차는 이전과 다르게 개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이 독립된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채택되었음.
 - ▶ 이 영역은 크게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과 관련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월경건강, 임신·출산 및 임신중단, 난임 등과 같이 주로 보건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물론 젠더폭력 분야, 노동환경 분야, 교육 분야 등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김동식 외, 2021). 그리고 임신·출산 연령대 및 일부 계층으로 대상 범위도 제한적임.
 - ▶ 이처럼 전체 계획에서 성·재생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세부 분야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전 생애와 전 취약계층으로 확장은 한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국가 단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임.

<표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성·재생산권 관련 정책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5-1.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계획 수립)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 학생 대상 성교육, 교원 양성과정, 임용예정자 연수시 성평등·성교육 실시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비동의 간음죄 검토) 도입 여부 검토
1-5-2.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예방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모자보건법) 여성·영유아 건강 포괄적 보장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알 권리 제공)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기질환, 임신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 서비스 제공
		(포괄적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학교 단위에서 성 조숙증, 조기 월경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학부모 대상 홍보, HPV예방접종 남자청소년 확대
		(청소년 건강 지원) 생식 건강 검진과 치료 지원, 건강정보 제공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유해물질 예방) - (생활환경 개선)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 등 유해물질 조사, 시설 개선 - 임신부터 출생, 청소년까지 환경유해물질과 건강간 인과관계 연구,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방안 마련
월경 건강 보장	(월경 건강 지원) 월경에 대한 사회보장 인식 제고 및 생리휴가·결석 사용 보장	
	(월경용품 안전) 생리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신설, 월경용품 품질 점검 등 안전성 제고	
	(청소년 지원)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급 지속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12.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5-3.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건강한 임신 지원)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검진 도입,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위험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전문인력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지원) 대상 및 기간 단계적 확대 -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출산 인프라 확대 및 의료장비 접근성, 진료 편의성 제고 - (결혼이민자 지원) 방문 부모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 (청소년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만18세 이하→만24세 이하)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안전한 시술) 이식 배아수 기준 개선
		(정보제공·상담) 공공정보포털 내 난임시술 전후 필요한 정보 제공,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난임치료휴가 확대)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 연 3일에서 기간 확대 검토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의료 인식 개선) 산부인과 명칭 검토

정책과제¹⁾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어떤 특정 성이나, 연령, 인구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자 기본권으로써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가 요구됨.**

- ▶ 그러나 우리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법률과 정책은 각각의 영역이 개별법에 따라, 주관부처에 따라 분절·산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웰빙과 자기결정권, 정보 접근권 등과 같이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정책 영역을 포괄하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기본법(가칭)」을 신설하거나, 현행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분절 없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성·재생산을 인권 의제로서, 전 생애의 건강권과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장이라는 포괄적·보편적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여전히 임신·출산과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전통적 인구정책 관점에 머물러 있어, 그 한계를 극복이 필요함.
- ▶ 이런 변화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함.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 이행과 평가(모니터링)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반 국민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수요와 감시가 이행 및 평가체계에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주관부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 여기서의 내용은 김동식 외(2021)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안)은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기 바람.